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단5215744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64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가단5215744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 선고 2014. 12. 9.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8,752,348원 및 그 중 78,592,674원에 대한 2014. 7. 9.부터 2014. 8. 8.까지는 연 12%의,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4. 3. 5. 접수 제8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8,752,34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8,592,674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4.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8. 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인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액수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새시 제조업을 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 B으로부터 2013. 8. 31.부터 2014. 2. 28.까지 수회에 걸쳐 알루미늄 압출형재 등 합계 103,164,82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았다.
- (3) 그런데 피고 A은 피고 B이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계속 독촉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 대한 미정산 물품대금 채무 98,222,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06,222,000원에 피고 B에게 매도하되,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8,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A이 2014. 3. 5.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그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인 2014. 7. 9.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6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피고 A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이 운영하는 'D'은 피고 A이 운영하는 'C'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최상위 거래처에 해당하여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 A은 영업을 계속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 B과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8,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어 피고 B이 실제로 대물변제 받는 채권액은 매매대금의 약 25%에 불과한 점,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B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이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동건

별지